

행정처장 채용 재공고

「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서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19년 7월 15일

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

I

채용내용 상세

가.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

직위	인원	응시자격	임용기간
행정처장	1명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·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재직한 사람 · 종합병원 이상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· 위 각호에 준하는 경력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	2년 계약직 (연임가능)

나. 결격사유

- 1)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인사규정에 의거한 결격사유
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-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 -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 - 채용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만19세 미만인 자
- 2) 공직자 및 「공직자 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

다. 직책 및 담당업무

- 직 책 : 행정처장
- 담당업무 : 김천의료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라. 보수 : 경상북도김천의료원 보수규정에 의함

II 전형순서

가. 1차 : 서류전형

- 지원서 접수 마감 후 진행 예정

나. 2차 : 면접전형
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
-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10분 이내 발표

다. 3차 : 채용신체검사(공무원신체검사 판정기준)

라. 4차 :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이사회 승인 후 최종 임용 확정

지원서 접수기간	서류 및 면접심사	이사회 승인	최종임용자 발표
'19. 7. 15.(월) ~ '19. 7. 29.(월)	'19. 8. 1.(목) 예정	경상북도김천의료원 정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최종예정자 동의 후 결정 ('19. 8월 중순 예정)	최종 임용 ('19. 8월말 예정)

※ 본원 사정에 따라 일부 일정 조정 가능

Ⅲ

채용일정

가. 지원서 접수기간 : 2019. 7. 15.[월] ~ 7. 29.[월]

※ 7.29(월) 17: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(근무시간내 접수)

1) 접수방법 : 우편(등기) 및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)

2) 접 수 처 :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(모암동)

경상북도김천의료원 총무부(우 : 39579)

나. 시험일정

1) 서류심사 : 접수된 서류 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

2) 면접전형 :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(합격자 개별 통보)

3) 채용신체검사 :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(개별통보)

4)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이사회 승인(정관 제 29조 2항)

-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한 행정처장 임용 동의 요청

- 이사회 동의를 거쳐 최종 임용(부결 시 불합격 처리함)

가. 1차 제출서류

- 1) 응시원서(본원 소정양식) 1부
- 2) 자기소개서(본원 소정양식) 1부
- 3)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(본원 소정양식) 1부
- 4) 각종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격 소지자에 한함)

나. 2차 제출서류(면접합격자에 한함)

- 1)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신체검사 판정기준) 1부
※ 가까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(김천의료원 등)에서 발급 가능
- 2) 가족관계증명서 2부, 주민등록등본 1부
- 3)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,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부
- 4)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(여성제외)
- 5)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증빙서류 사본 1부(해당자)

다. 3차 제출서류(임용 전까지)

-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결정서 1부
※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, 취업심사 대상자는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'취업가능'으로 결정된 심사결정서 필요

- 가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나.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다.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부적격, 신원조회 부적격 등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마.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라 면접전형에 만점의 5% 가산이 있습니다.
- 바. 장애인대상자는 장애인고용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수첩(복지카드) 제출 시 면접전형의 가점이 있습니다.
- 사. 입사지원서는 경상북도김천의료원 홈페이지(www.gcmc.or.kr) 채용 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총무부 (☎054-429-801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